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분권 사전협약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20870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당시 변경된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 방법을 당초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약의 법적 근거 상향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약의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민감사청구 관련 사항 공표 방법 확대(안 제23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홈페이지 외에 감사 청구를 받은 주무부처의 게시판·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게시판·홈페이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등) <삭 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 법 제15조의2-----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② 제1항----- ----- -----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
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
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
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
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
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

--.

③ 제2항-----

--.

④ ----- 법 제15조
의2-----

-----.

⑤ ----- 제4항-----

-----.

⑥ ----- 제2항-----

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 -----.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 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u>지방자치단체의 공보·게시판·홈페이지</u>나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공표 방법 등) ----- ----- ----- ----- <u>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홈페이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06